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복기왕·김영배·박균택

박지혜 · 서미화 · 오기형

박홍근 • 이연희 • 김준혁

박용갑 • 윤건영 • 강준현

임호선 · 송재봉 · 문대림

이병진 · 양부남 · 김동아

이광희 • 박희승 • 김성화

박수현 • 이재관 • 강훈식

박범계 • 문진석 • 한병도

신영대 · 전형희 · 이정문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 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공동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등 식자재구입비 및 부식구입비와 인건비 등"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냉난방 비용"을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 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등 식자재구 입비 및 부식구입비와 인건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보조할 수 있다.